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울산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고정 761,762(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고정761, 762(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송민주(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정761」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13:09경 양산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지난번에 내가 보낸 식빵 먹지 않고 내다 버렸지요? 무슨 독약이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들었는지 모른다 싶어 벌 받을 거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정762」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G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5. 25. 10:58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번호: E)으로 피해자 G의 휴대폰(번호: H)으로 "엉덩이도 가슴도 없는 여자, 다방출신" 라며 통신매체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며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5. 26. 22:32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번호: E)으로 피해자 G의 휴대폰(번호: H)으로 "엄마가 섹스하는 광경을 상상하고 있겠지요, 그 나이에는 물이 많이 안 나와" 라며 통신 매체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며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6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문자내역서

[2018고정76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 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 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판사 정재욱